

2015년 규정	2016년 규정
<p><b>제4장 팀 등록규정</b></p> <p><b>제1조 총칙</b> 본 규정은 국제자동차연맹(이하 FIA라 한다)과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경주협회(이하 KARA라 한다)의 공인 하에 행하여지는 자동차 경기에 참가하려는 팀 등록에 대하여 적용한다.</p> <p><b>제2조 팀의 등록</b> 2.1 자동차 경기에 참가하려는 팀은 FIA의 국내스포츠규정(ISC규정) 및 부칙과 이에 기초한 KARA의 국내스포츠규정과 제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KARA에 등록하여야 한다.</p> <p>2.2 등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KARA에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. 단 KARA의 사무국에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이유를 밝힐 필요 없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 또한 본 규정의 각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KARA의 사무국의 결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<b>제3조 팀의 신청 자격</b>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인 팀의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. 3.1 모터스포츠에 공헌하는 사업목적을 갖는 법인 또는 KARA가 인정한 임의 단체. 3.2 공인 경기에 팀으로 참가하거나 할 계획이 있을 것. 3.3 자동차 경기의 제반 규칙에 정통한 자가 KARA의 회원으로 최소한 5명 이상 가입되어 있을 것.</p> <p><b>제4조 신청서류</b> 팀으로 KARA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, 기존 팀도 매년 갱신된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의 서류와 비용을 제출한다.</p> <p>4.1 KARA 소정의 신청 양식. 4.2 등록규정에 해당하는 비용.</p>	<p><b>제4장 팀 등록규정</b></p> <p><b>제1조 총칙</b> 본 규정은 국제자동차연맹(이하 FIA 라 한다)과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(이하 KARA 라 한다)의 공인 하에 행하여지는 자동차 경기에 참가하려는 팀 등록에 대하여 적용한다.</p> <p><b>제2조 팀의 등록</b> 2.1 <b>KARA 공인</b> 자동차 경기에 참가하려는 팀은 FIA 의 국제스포츠규정(ISC 규정) 및 부칙과 이에 기초한 KARA 의 국내스포츠규정과 제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<b>반드시</b> KARA 에 등록하여야 한다.</p> <p>2.2 등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KARA에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. 단 KARA가 지정한 협의체에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<b>그 이유를 밝히고 등록을 거부 및 취소할 수 있다.</b></p> <p><b>제3조 팀의 신청 자격</b>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인 팀의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. 3.1 모터스포츠에 공헌하는 사업목적을 갖는 법인 3.2 공인 경기에 팀으로 참가하거나 할 계획이 있을 것. 3.3 자동차 경기의 제반 규칙에 정통한 자가 KARA의 회원으로 최소한 5명 이상 가입되어 있을 것.</p> <p><b>제4조 신청서류</b> 팀으로 KARA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, 기존 팀도 매년 갱신된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의 서류와 비용을 제출한다.</p> <p>4.1 KARA 소정의 신청 양식. 4.2 등록규정에 해당하는 비용.</p>

<p><b>제5조 팀의 신청</b> 5.1 등록 신청서는 KARA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5.2 KARA는 등록 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한다.</p> <p>5.3 팀 등록이 거부 될 경우에 비용은 반환된다.</p> <p><b>제6조 심사</b> 접수된 등록 신청서는 KARA 사무국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심사한다.</p> <p>6.1 경기 참가능력과 팀 운영능력.</p> <p>6.2 제반 규칙의 준수와 의무의 실행 능력.</p> <p>6.3 기타 KARA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.</p> <p><b>제7조 자격의 제한</b> KARA 사무국은 등록을 신청한 팀의 자격을 심사, KARA가 정한 팀 등록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.</p> <p><b>제8조 비용</b> 비용은 별도로 정한 표를 따른다.</p> <p><b>제9조 인증서</b> 팀 등록을 완료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팀은 KARA가 발부하는 인증서를 받는 때부터 자격이 인정된다.</p> <p><b>제10조 팀 자격의 상실</b> 팀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게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KARA는 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10.1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때.</p> <p>10.2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 신청한 경기에 불참할 때.</p> <p>10.3 KARA의 사무국에서 등록 팀으로서 부적격</p>	<p><b>제5조 팀의 신청</b> 5.1 등록 신청서는 해당년도 공인경기 참가 전 우편, 전자 수단을 포함을 통해 KARA 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5.2 KARA는 등록 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한다.</p> <p>5.3 팀 등록이 거부 될 경우에 비용은 반환된다.</p> <p><b>제6조 심사</b> 접수된 등록 신청서는 KARA 사무국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심사한다.</p> <p>6.1 경기 참가능력과 팀 운영능력.</p> <p>6.2 제반 규칙의 준수와 의무의 실행 능력.</p> <p>6.3 기타 KARA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.</p> <p><b>제7조 자격의 제한</b> KARA 사무국은 등록을 신청한 팀의 자격을 심사, KARA가 정한 팀 등록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.</p> <p><b>제8조 비용</b> 비용은 별도로 정한 표를 따른다.</p> <p><b>제9조 인증서</b> 팀 등록을 완료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팀은 KARA가 발부하는 인증서를 받는 때부터 자격이 인정된다.</p> <p><b>제10조 팀 자격의 상실</b> 팀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게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KARA는 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10.1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때.</p> <p>10.2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 신청한 경기에 불참할 때.</p> <p>10.3 KARA의 사무국에서 등록 팀으로서 부적격</p>
---	---

<p>하다고 판단되었을 때.</p> <p>10.4 영구팀의 경우 5년 이상, 단기 등록팀의 경우 2년 이상 공식 경기 참가 기록이 없는 경우는 자격을 상실한다.</p> <p>10.5 단기등록과 연간 등록팀의 경우 해당연도 갱신비를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한다.</p> <p>10.6 민·형사상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.</p> <p>10.7 10.4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팀이 재등록을 할 때는 등록비를 다시 내야 한다.</p> <p><b>제11조 변동사항의 보고 의무</b>  팀으로 자격을 인정받은 단체는 등록 신청서에 기재(팀명 등), 첨부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사유를 7일 이내에 문서로서 KARA에 보고하여야 하며, KARA로부터 인정받기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사용할 수 없다.</p> <p><b>제12조 권한</b>  공인팀으로 등록된 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.</p> <p>12.1 공인 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갖으며 팀으로서의 기록이 인정된다.</p> <p>12.2 공인 팀으로서의 정보와 교육을 받을 수 있다.</p> <p>12.3 영구등록팀과 단기등록팀에 한하여 선수 라이선스 국내C와 B 유자격자를 추천할 수 있다. 단, 라이선스 발급은 KARA가 별도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.</p> <p>12.4 프로그램 북 등 공식적으로 팀으로 노출이 가능하다.</p> <p><b>제13조 벌칙</b>  KARA의 등록팀은 FIA ISC규칙과 국제스포츠규정, 동 부칙, 경기 특별규칙, KARA의 기관지나 KARA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포하거나 개정하는 KARA의 고시, 경기 주최허가, 부대조건, 공식통</p>	<p>하다고 판단되었을 때.</p> <p>10.4 영구팀의 경우 5년 이상, 단기 등록팀의 경우 2년 이상 공식 경기 참가 기록이 없는 경우는 자격을 상실한다.</p> <p>10.5 단기등록과 연간 등록팀의 경우 해당연도 갱신비를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한다.</p> <p>10.6 민·형사상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.</p> <p>10.7 10.4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팀이 재등록을 할 때는 등록비를 다시 내야 한다.</p> <p><b>제11조 변동사항의 보고 의무</b>  팀으로 자격을 인정받은 단체는 등록 신청서에 기재(팀명 등), 첨부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사유를 7일 이내에 문서로서 KARA에 보고하여야 하며, KARA로부터 인정받기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사용할 수 없다.</p> <p><b>제12조 권한</b>  공인팀으로 등록된 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.</p> <p>12.1 공인 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<b>가지며</b> 팀으로서의 기록이 인정된다.</p> <p>12.2 공인 팀으로서의 정보와 교육을 받을 수 있다.</p> <p>12.3 영구등록팀과 단기등록팀에 한하여 선수 라이선스 국내C와 B 유자격자를 추천할 수 있다. 단, 라이선스 발급은 KARA가 별도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.</p> <p>12.4 프로그램 북 등 공식적으로 팀으로 노출이 가능하다.</p> <p><b>제13조 벌칙</b>  KARA의 등록팀은 FIA ISC규칙과 국제스포츠규정, 동 부칙, 경기 특별규칙, KARA의 기관지나 KARA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포하거나 개정하는 KARA의 고시, 경기 주최허가, 부대조건, 공식통</p>
---	--

<p>지, 트랙의 특별규정 중 어떠한 것이든 위반할 때에는 벌칙의 대상이 된다.</p> <p><b>제14조 규정의 시행</b>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지, 트랙의 특별규정 중 어떠한 것이든 위반할 때에는 벌칙의 대상이 된다.</p> <p><b>제14조 규정의 시행</b> 본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
--	--